

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9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0년 9월 1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류한철

1. 수정이유

-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허용지역에 법령의 위임범위에 없는 내용중 지역여건의 판단지역이 다른 내용과 유사하여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지역 내용중 “주민정서 및 주변 여건 판지지역을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·미풍양속 등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”으로 내용 일부를 보완함. (안 별표 제8호)
- 설치허용지역 내용에 “주변여건의 판단지역”이 안 제8호의 내용과 유사하여 별표 제9호를 삭제함.

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[별표]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지역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허 용 지 역
8. 주민정서 및 주변 여건 판단지역	·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·미풍 양속 등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
9. (삭 제)	

수 정 안 대 비 표

개 정 안		수 정 안	
[별표]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지역		[별표]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지역	
구 분	허 용 지 역	구 분	허 용 지 역
1. - 7. (생 략)		1. - 7. (개정안과 같음)	
8. 주민거주 지역	· <u>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</u>	8. 주민정서및 주변여건 판단지역	· <u>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·미풍양속등 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</u>
9. 주변여건 판단지역	· <u>미풍양속 및 주변지역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</u>	9. (삭 제)	